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진중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861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이스포츠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법인세 공제기간 확대 (진중오의원안)	2

I. 개요

1. 진중오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86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진중오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3. 30.
- (3) 회 부 일 : 2026. 3. 3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일로부터 3년간 이스포츠경기부 운영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스포츠의 경제적 효과 및 문화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스포츠에 대한 해외 각국의 재정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스포츠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운영비 부담으로 인해 구단이 해체되거나 유망 선수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스포츠경기부 운영비에 대한 법인세 공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이스포츠경기부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2제3항 및 제5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이스포츠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법인세 공제기간 확대 (진중오의원안)

현 행	개정안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2) ○ 대상: 내국법인 ○ 운영비용 공제액 ① 운동경기부: 3년간 10% ② 장애인운동경기부: 5년간 20% ③ 이스포츠경기부: <u>3년간 10%</u> ○ 사후관리 ① 운동경기부: 창단 후 3년 이내 해단 시 지원액 추정 ② 장애인운동경기부: 창단 후 5년 이내 해단 시 지원액 추정 ③ 이스포츠경기부: 창단 후 <u>3년</u> 이내 해단 시 지원액 추정	☐ 이스포츠경기부 법인세 공제기간 확대 ○ 대상: (현행과 같음) ○ 운영비용 공제액 ① 운동경기부: (현행과 같음) ② 장애인운동경기부: (현행과 같음) ③ 이스포츠경기부: <u>5년간 10%</u> ○ 사후관리 ① 운동경기부: (현행과 같음) ② 장애인운동경기부: (현행과 같음) ③ 이스포츠경기부: 창단 후 <u>5년</u> 이내 해단 시 지원액 추정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진중오의원안 2026. 3. 30. 발의(의안번호 17861)

☐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이스포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이스포츠경기부의 운영비용의 10%만큼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공제기간을 창단 이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연장된 공제기간에 맞추어 지원액 추정기한 역시 창단 이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104조의22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인기종목¹⁾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3년간 선수, 감독, 코치 등 인건비 및 대회참가비 등 운영비용의 10%(장애인 운동경기부의 경우 5년간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비인기종목 운동경기부 창단을 유도하고 해당 종목의 선수를 육성함으로써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해당 종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0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한 제도임.

이후 2021년 세법개정을 통해 기업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스포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²⁾을 하기 위한 경기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3년간 인건비 및 대회 참가비 등 운영비용의 10%를 공제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3년(장애인운동경기부의 경우 5년) 이내에 해당 운동경기부를 해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단 구성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음.

1) 육상, 역도, 핸드볼, 럭비, 여자축구, 비치사커, 배드민턴, 테니스, 정구, 스쿼시, 탁구, 복싱, 유도, 레슬링, 체조, 사이클, 승마, 하키, 아이스하키, 사격, 펜싱, 양궁, 근대5종, 트라이애슬론, 카바디, 소프트볼, 볼링, 세팍타크로, 스포츠클라이밍, 패러글라이딩, 롤러스포츠, 수영, 다이빙, 수구, 아티스틱스위밍, 조정, 카누, 요트,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점프, 스노보드, 프리스타일스키, 노르딕복합, 바이애슬론,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컬링, 태권도, 카라테, 우슈, 주짓수, 킥복싱, 바둑

2)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FIFA 온라인 4, 브롤스타즈, 서든어택, 카트라이더, 오디션, eFootball PES 2023, 클래시 로얄, A3: 스틸얼라이브, 스타크래프트2, 하스스톤, 크로스파이어, 이터널리턴, 발로란트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법인세	5	1	0.05	3	5	1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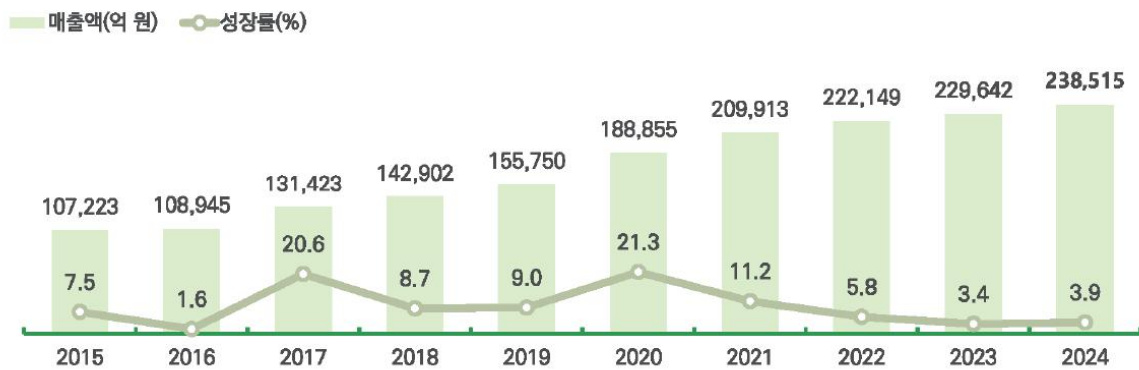
주: 2025년, 2026년은 전망치임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 한편, 국내 게임산업은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2024년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2023년 대비 3.9% 증가한 23조 8,518 억원에 달함.

[국내 게임시장 전체 규모 및 성장률]

(단위 : 억 원, %)



주: 게임시장은 게임 제작 및 배급업(PC 게임, 모바일 게임, 콘솔 게임, 아케이드 게임)과 게임 유통업(PC방, 전자 게임장)을 포함함.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25 대한민국 게임백서, 2026. 3.

□ 2025 이스포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이스포츠 산업 규모 추정치는 약 2,87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하였는데, 이는 게임단 예산 증가 및 종목사 매출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임.

[최근 3년간 국내 이스포츠 산업규모 세부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3년 대비 2024년 증감률
상금 규모	216.4	190.1	183.1	-3.7
게임단 예산	963.0	1,155.5	1,426.1	27.8
미디어업 매출	862.5	959.2	922.9	-3.8
종목사 매출	199.0	186.0	234.1	25.9
데이터 플랫폼 매출	142.1	118.7	105.9	-10.8
산업규모	2,383.0	2,569.5	2,872.1	11.8

주: 종목사란 이스포츠 게임의 기획, 개발, 출시, 업데이트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사업체를 말함.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25 이스포츠 실태조사, 2025. 12.

□ 개정안은 기업의 이스포츠경기부 창단 및 운영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이스포츠경기부 운영비용에 대한 공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음.

첫째, 이스포츠경기부는 수익 대비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경기부의 해체가 잦은 실정으로 이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16개 이스포츠 게임단을 대상으로 게임단 운영과 관련하여 겪는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자생적 수익 창출 전략 수립의 어려움(56.3%)과 수익 구조 전반의 불안정성(56.3%)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³⁾

둘째, 이스포츠경기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선수에 대한 처우와 향후 진로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실정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한국콘텐츠진흥원, 2025 이스포츠 실태조사, 2025. 12.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스포츠 프로선수의 연령대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67.1%이며, 애로사항은 ① 불투명한 향후 진로 54.5%, ② 군복무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50.3%, ③ 심리적 스트레스 또는 정서적 소진 49.7%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또한, 선수들의 연봉 분포를 살펴보면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 2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2,000만원 미만이 16.1%를 차지하였음.

- 다만, 현행법상 육상, 역도 등 비인기 운동종목에 대하여 3년간 경기부 운영비의 10%를 공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스포츠 경기부에 대하여 다른 비인기종목 운동경기부보다 장기적인 과세 특례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154